

# 4차산업혁명 시대의 금융규제개혁 동향 연구

(국외단기훈련, 개인훈련)

2019년 1월

금 융 위 원 회  
( 김 현 광 )

- 차 례 -

국외훈련 개요 .....	2
훈련기관 개요 .....	3
요약문 .....	4
I. 서론 .....	6
II. 본론 .....	9
제1장 제4차 산업혁명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	9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	9
제2절 신기술이 금융회사에 가져올 변화 .....	11
제2장 영국의 금융규제 정책 동향 .....	15
제1절 영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	15
제2절 영국정부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	17
제3절 영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	23
제3장 한국의 금융규제 정책의 변화 .....	31
제1절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	31
제2절 규제완화를 위한 제도적 노력 .....	38
제3절 한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	47
III. 결론 및 시사점 .....	52
참고문헌 .....	59

## 국외훈련개요

1. 훈련국 : 영국
2. 훈련기관명 : 다이노소 머천트 뱅크(Dinosaur Merchant Bank)
3. 훈련분야 : 금융
4. 훈련기간 : 2018. 7. 3. ~ 2018. 12. 31.

## 훈련기관개요

### 훈련기관 소개서

명 칭	Dinosaur Merchant Bank (다이노소 머천트 뱅크)	훈련기관 성 격	기업
소재지 (홈페이지)	London, UK ( <a href="http://dinogroup.eu/">http://dinogroup.eu/</a> )		
연 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첨단 기술 및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개인과 기업 고객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솔루션 제공 제공하고자 2001년 설립</li> <li>• 이후 17년동안 해외금융자산 보관 및 관리, 무역어음 인수, 증권 및 채권 발행, 자본시장 등에 대한 투자자문, 개인 및 기관의 자산 운용, 주식, 외환, 선물 거래 및 중개 업무, 지급결제 서비스 업무 등 다양한 금융업무 등을 수행</li> </ul>		
조 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고경영자 및 7인의 집행임원으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주요정책 결정</li> <li>• 국외 3개국에 4개 지사 운영</li> <li>• 독립적 권한을 가지는 준법감시인 설치</li> </ul>		
주요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Glenn Grossman (CEO) - 최고경영자 / 2001, Dinosaur Merchant Bank 설립</li> <li>• Tenette Abanila (COO) - 유럽 지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li> <li>• Paul Becker (Managing Director) - 글로벌 마케팅 및 컨설팅 담당 전무이사</li> </ul>		
교섭창구	David M. Kirby (Head of Compliance)		
	전 화 : +44-207 -4961785	FAX:	E-mail: <a href="mailto:dkirby@dinosaur.eu">dkirby@dinosaur.eu</a>

## 훈련결과보고서 요약서

성 명	김 현 광	직 급	행정주사
소 속	금융위원회 기획조정관 감사담당관		
훈 련 국	영국	훈련기간	‘18.7.3. ~ ’ 18.12.31.
훈련기관	다이노소머천트뱅크	훈련구분	단기
훈련목적	금융규제 연구	보고서매수	54매
내용요약	<p>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사회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환경 전반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다양한 기술들이 금융업에 다양한 형태로 융합되어 금융 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고 핀테크의 형태로 진화하여 금융업의 디지털화 및 탈중개화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으며, 동시에 기존 금융기관들의 이익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p> <p>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 모바일 기기의 활용한 은행 서비스, 간편결제 서비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 다양한 개인정보의 활용 등으로 기존 은행업에 큰 도전이 되고 있으며, 주식거래 수수료 하락,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거래나 자산관리서비스, 로보어드바이저의 보편화, 투자자 간 네트워크 확대와 펀딩 포털 등 플랫폼의 발달로 자본시장에서도 많은 변화도 진행중이다.</p> <p>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성장해왔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의 인접성, 정부의 적극적 규제환경 조성, 핀테크 허브간의 우수한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예를 들어 FCA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감독의 역할을 넘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핀테크 상품의 출시 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p> <p>영국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실험의 장’ 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세계 최초로 시작하였다. 핀</p>		

테크 산업 및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주도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상품·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시간과 잠재적 비용의 절감, 자금조달에 관한 접근 개선, 좀더 많은 혁신적 상품의 시장화 등 잠재적 이점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영국에서 시작된 샌드박스는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로 도입되었고, 한국에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이미 핀테크 스타트업이 활성화, 기존 금융기관과의 제휴 및 지원, 정부 차원에서 설립 운영 중인 핀테크 지원센터 등으로 핀테크 산업이 활발하게 발전되고 있다.

정부에서도 새로운 환경에 맞지 않는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금융혁신지원특별법의 제정, 신용정보법 개정, P2P 대출 법제화 추진,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시도를 하고 있으며, 현재의 규제 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될 예정이며, 이를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이미 4차 산업혁명은 시작되었고, 이러한 큰 변화 흐름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는 금융권에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인프라 등 제도를 정비하고, 금융과 다른 산업·기술 등 간의 융합을 통해 금융부문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해야 한편, AI,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하며,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철저히 하는 등의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I. 서론

최근 다양한 신기술의 융합으로 사회 전반에 변화가 초래되고 있으며, 특히 금융회사를 포함한 금융환경 전반의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다보스 포럼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 시대가 도래하였다고 판단하였는데, 제4차 산업혁명을 통해 제조업과 IT, BT 등 그간 독자적으로 활용되어 왔던 기술들이 융합되어 인류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시대를 접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4차 산업혁명은 ICT와 산업의 결합으로 새로운 형태의 제품, 서비스 및 비즈니스를 만들어 내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는 핵심 기술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모바일, 클라우드, IoT, 블록체인 및 바이오인증 등이 있다. 이러한 핵심 기술들이 금융업에 다양한 형태로 융합되어 금융혁신을 촉진시키고 있고 또한 핀테크를 더욱 심화·확산시켜 금융업의 디지털화 및 탈중개화 현상을 가속화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특징은 통상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모든 제품이 IoT를 통해 네트워크에 연결하는 제품의 스마트화

둘째, 제조업의 주력사업이 제품 판매에서 정비 및 부품서비스 등으로 변화해 가는 제조업의 서비스화

셋째, 탈중개형 사업모델의 등장 및 플랫폼 중심 비즈니스의 가치 상승을 의미하는 가치사슬의 붕괴

넷째, ICT와 타산업의 융합 가속화와 인공기능 기술을 활용한 지능화 및 융합화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참고] 4차 산업혁명 개념

- 1차 산업혁명의 주요 동인으로 1784년 증기기관, 2차는 1870년대 전력망, 3차는 20세기 중후반 컴퓨터·인터넷 등을 지적 (☞ 손·발을 기계가 대체·자동화)
- 4차 산업혁명은 3차 산업혁명의 연장선상에서 개별 기술들이 융합·연결되어 보다 지능적인 사회로 진화하는 현상 (☞ 사람의 두뇌를 인공지능으로 대체)
- 4차 산업혁명은 다양하게 정의 : WEF는 금융·드론·생명공학까지 포괄한 기술혁명, 독일은 스마트공장화(industrie 4.0), OECD는 제조혁명으로 정의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은 금융산업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금융산업 중에 특히 소비자금융과 지급결제서비스 분야에 많은 핀테크 기업들이 진출하여 기존 금융기관들의 이익을 잠식해 나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각국 정부는 금융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고 핀테크 기업들이 발전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설치하고, 핀테크 기업에 은행의 일부 업무를 허용하는 등 과감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 또한 과점화된 은행시장의 경쟁을 유발하고 은행이 독점하고 있는 데이터의 공유 및 활용을 위해 오픈뱅킹의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 정부도 혁신적 금융서비스의 실험이 가능할 수 있도록 금융지원특별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2018. 12. 7., 국회를 통과하여 2019년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으며, 포지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를 핀테크 혁신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체계로 바꾸는 행정규제기본법에 2018.10.18., 개정되어 시행되었다. 뿐만 아니라 혁신전 핀테크 서비스의 출현을 막는 전자금융거래법의 개편과 금융 데이터의 창출과 활용을 가로막고 있는 정보규제법 간 규제 체계를 개선하려고 준비 중이다.

또한 우리 정부는 2018년 7월 금융 분야 MyData 산업 도입방안을 발표하고, 2019년부터 ‘본인신용정보관리업’을 신설하기 위해 신용정보법 등의 규제 정비를 추진 중이며, 저렴한 부담(가맹점), 간편한 결제(금융소비자)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모바일 결제 활성화 여건을 마련 중이다.

국내 금융기관들 또한 이러한 환경변화에 따라 사업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보인다. 각국 정부는 물론 우리나라 정부도 핀테크 기업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동시에 금융 산업의 혁신을 도모하고자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핀테크 업체들 또한 금융회사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틈새시장을 중심으로 한 독자모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변화가 금융분야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우리 나라의 발전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영국 등 선진국의 금융규제 동향 등을 연구하여 향후 국내금융 전략 수립시 정책적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특히 잠재적 사업자의 신규 금융서비스 비즈니스화 과정에서의 애로사항 등 정책수요가 원활하게 금융규제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II. 본론

### 제1장 제4차 산업혁명이 금융산업에 미치는 영향

#### 제1절 제4차 산업혁명과 핀테크

##### 1. 핀테크 개요

핀테크(FinTech)란 금융(Finance)과 기술(Technology)를 합성한 용어로 IT 기술의 발전을 바탕으로 자산관리, 지급 결제 등 금융의 다양한 분야를 진보시키는 기술 또는 서비스를 뜻한다. 핀테크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및 유형 등에 따라 전통적인 핀테크와 신형적인 핀테크로 구분할 수 있다.

전통적인 핀테크란 금융기관의 서비스를 혁신하는 IT 서비스, 정보기술 솔루션 및 금융 어플리케이션 등을 의미하고, 신형적인 핀테크란 클라우드 펀딩, P2P 등 기존의 서비스를 대체하는 새로운 금융서비스를 뜻한다. 핀테크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와 사용자 편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금융서비스의 확대(scale-up)가 용이하며 기존 금융 서비스 시스템 및 플랫폼에 대한 유산으로 인한 비용이 낮다. 특히 지급결제는 고객 맞춤형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활발하게 변화가 이뤄지고 있는 분야다. 모바일 및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전통적인 지급결제 서비스 개선에 대한 금융고객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유럽에서 매우 큰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클라우드 펀딩 및 P2P 대출 등 대체금융 플랫폼(alternative finance platform)도 각광 받는 핀테크 서비스다. 향후에는 핀테크의 핵심서비스 분야가 사물인터넷(IoT) 및 블록체인 등까지 확장될 것으로 예상된다.

## 2. 핀테크 활성화 조건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핀테크 생태계의 구축을 위해서는 우선 혁신적인 인재가 필요하다. 핀테크 관련 기술과 금융서비스 지식을 보유하고 있고 혁신역량을 함께 보유한 인재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 핀테크기업을 창업하고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자금조달이 용이해야 한다.

핀테크 성장을 위한 제도적, 세제적 측면에서의 정부의 지원정책도 중요하다. 또한, 개인, 기업 및 금융회사의 핀테크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충분한 수요가 존재해야 한다.

## 3. 핀테크 기업의 진출 예상 금융분야

핀테크 기업이 금융산업에 진출하는 분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있다. 2018년에만 해도 대부분의 핀테크 기업은 지급서비스 분야에 진출하였으나 2013년에 이르러 해당 분야의 비중은 크게 감소하였다. 대신 은행업과 기업재무 분야에 대한 진출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 2013년에는 가장 많이 진출하는 분야가 되었고, 그 다음이 지급서비스 분야, 데이터분야의 순서로 나타났다.

또한 2015년 Mckinsey Global Banking Annual Review는 향후 10년 내 많은 금융회사들이 수익기반을 잃을 수 있고, 이러 인해 금융 안정성 및 소비자 보호가 중요한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2016년 PwC Global Fintech Survey는 2020년까지 핀테크에 의해 가장 큰 위협을 받을 금융 분야로 소비자금융, 펀트 이체 및 지급서비스 분야를 들고 있다. PwC는 2025년까지 은행 이익 중 소비자금융 60%, 지급결제 35%, 중소대출 35%, 자산관리 30%가 잠식당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제2절 신기술이 금융회사에 가져올 변화

신기술이 금융회사에 가져올 변화는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① mobile device(mobile platform) : 소비자들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크게 제고하여 ubiquitous banking 환경을 제공할 것이다. 또한 비대면채널의 확산으로 금융회사의 영업인력과 조직이 축소되고, IT기술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예 : 골드만삭스)
- ② disintermediation : 금융의 탈중개화로 인해 기존 금융회사와 중개기관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이다.
- ③ unbundling : 은행업무의 분해가 진행되어 특정 분야에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업체가 등장한다.(예 :페이팔, 벤모, 토스 등)
- ④ convergence : 금융업과 비금융업의 경계 및 금융거래의 국가간 경계가 약화될 것이다. 네트워크 기술의 발달로 정보비용이 감소하고 특정 지역 금융회사가 전 세계 금융소비자를 대상으로 금융서비스를 손쉽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예 : 아시아 역내 결제 네트워크)

### 1. 은행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

- ① 인터넷 전문은행의 등장은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 부담 등을 줄여 예금 및 대출금리와 수수료가 하락하게 된다.
- ② 모바일 기기의 활용으로 언제 어디서나 은행서비스 접근이 가능해진다.
- ③ 은행서비스의 공급주체가 분산화·외주화되어 은행의 기존 수익모델은 큰 도전에 직면하게 된다.

- ④ 서비스 제공 시 과거보다 훨씬 다양한 개인정보를 활용하게 되면서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이 높아져 보안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될 것이다.
- ⑤ 최근 간편결제서비스 확산 추세는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이고 은행망에 대한 의존도가 계속 줄어들 것이다.
- ⑥ 주변국, 특히 동아시아 지역 진출을 위한 은행 대형화가 추진될 것이다.

## 2. 증권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

- ① 거래 수수료 하락으로 가격이 아닌 차별화된 고부가가치 서비스 중심의 경쟁 체제로 전환될 것이다.
- ②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알고리즘 거래나 자산관리서비스 같은 고급 서비스가 대중화될 것이다.
- ③ 로보어드바이저 보편화로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을 초월한 맞춤형 자산운용 서비스의 혜택을 누리게 될 것이다.
- ④ 투자자 간 네트워크 확대와 펀딩 포털 등 플랫폼의 발달로 자본시장에서의 자금조달 방법이 더욱 다양화될 것이다.
- ⑤ 국내 증권사 간 인수합병을 통한 대형화가 이루어지고 글로벌 자본시장을 타겟으로 업무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다.

## 3. 보험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

- ① 보험업은 지금까지 전자금융에 가장 영향이 적은 시장이었으나, 향

후 4차 산업혁명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을 시장으로 전망된다. 개별 소비자에게 차별화된 독자적인 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시장이나 지금까지 보험상품의 복잡성으로 이런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였다.

- ② 인공지능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개별 소비자에게 적합한 보험상품을 제공할 것이다.
- ③ IoT 기술을 활용한 헬스케어 업체 등과 보험회사 역할의 경계가 모호해져 상호 간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전망된다.(예 : 보험상품 개발은 IoT 업체가 담당)
- ④ 특히 자율 주행 자동차 등장으로 자동차 사고가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인간에 대한 사고 보상 비용이 줄어들어 손해보험 산업의 축소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 ⑤ 보험업에 비금융회사의 진출, 보험 가입자 정보의 광범위한 활용에 따른 정보보호 문제 등은 향후 규제 이슈로 대두될 전망이다.

#### 4. 신용카드업에 미칠 영향과 전망

- ① 모바일 직물결제가 늘어나면서 신용카드 사용 결제를 대체할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예 : 한국은행과 은행권의 모바일 직물서비스의 활성화 추진, 서울페이 등 제로페이의 등장)
- ② 인터넷 전문 은행의 등장으로 신용카드사를 거치지 않고 계좌간 직접 결제가 가능해져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오프라인 결제의 경우 신용카드사와 가맹점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중소형 쇼핑몰의 가맹점 역할을 대리해주는 PG(Payment Gateway)사가 제외되고 VAN(Value Added Network, 신용카드 정보 조회)사가 신용카드사와 직접 연결된다.

- ③ 블록체인, 바이오 인증기술, 모바일 인식기술 등의 국제표준화 작업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 ④ 고객 데이터 분석능력 강화 및 사업화 전략을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 카드사들이 가지고 있는 상대적 경쟁력인 방대한 규모의 고객정보, 가맹점, 전속시장을 빅데이터 분석 역량을 통해 비즈니스로 연결시켜야 한다.

## 5. 규제산업의 변화(Regtech)

레그테크란 기존 금융 사업을 영위하거나 핀테크 등 혁신적인 사업 모델을 운영함에 있어 각종 규제 및 법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여 준법성을 향상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제고하기 위한 기술로서 규제대응을 자동화하고, 이를 실시간으로 활용하는 새로운 접근 방식을 의미한다.

금융범죄가 날로 첨단화되어 기존 준법감시 업무 방식으로는 범죄 대응에 한계가 있고, 또한 소액 해외송금업 등 핀테크 업체의 금융시장 진출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이들은 자금세탁방지, 테러자금방지 등 법규준수 능력이 저조하므로 저비용·고효율의 레그테크가 필요하다. 레그테크를 활용해 개별 금융회사는 법규준수 능력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장 전체적으로는 준법감시 및 법규준수를 위한 사회적 비용이 절감되는 등 혜택을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감독 당국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의 개발, 블록체인을 활용한 실시간 금융회사 감시·감독시스템의 구축, 블록체인을 활용한 디지털 신원확인 등 준법감시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 호주 증권투자위원회(ASIC),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 등은 레그테크의 활용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며 시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 제2장 영국의 금융규제 정책 동향

### 제1절 영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속히 성장해 왔으며, 글로벌 금융시장에의 인접성, 정부의 적극적 규제환경 조성, 핀테크 허브간의 우수한 네트워크 등을 바탕으로 글로벌 핀테크 산업을 선도하고 있다.

영국의 핀테크 시장은 2017년 기준 66억 파운드 규모이며, 핀테크 관련 고용 인력은 약 6만 1천여 명으로, 영국은 미국에 이어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핀테크 시장이 조성되어 있으며, 전 세계 주요국의 핀테크 시장 규모는 영국 66억 파운드, 뉴욕 56억 파운드, 캘리포니아 47억 파운드, 독일 18억 파운드 순이며, 핀테크 관련 보유 인력은 캘리포니아가 7만 4천 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또한 영국 내 금융 관련 종사자의 0.5%가 핀테크 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의 핀테크 산업은 급속도로 성장해왔으며, 2008년부터 핀테크 관련 거래 규모는 매년 74%씩 증가했고 투자 규모는 2008년에서 2017년 사이 약 8배 증가하였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존 은행에 대한 신뢰 하락과 함께 전통적 금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반면, 강력한 금융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비자 중심의 혁신적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핀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고 있다.

같은 기간 영국의 핀테크 관련 투자 규모는 매년 약 51%씩 성장해왔는데, 이는 전 세계 핀테크 투자 평균 성장률(26%) 및 캘리포니아(Silicon Valley)의 성장률(23%)을 훨씬 넘는 비율이다. 영국 핀테크 산업 구성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주로 은행업무 및 지급결제(banking and payments)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분야별 투자 규모를 살펴 보면 신용 및 대출에 대한 투자 비중이 높는데, 이는 2017년 기준 유럽 전체 규모의 75%를 차지한 영국의 높은 P2P 대출(peer-to-peer lending) 현황을 반영하고 있다.

영국의 EU 탈퇴 결정에 따른 불확실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런던은 최근 파이낸셜 타임즈(Financial Times)에서 발표한 국제금융센터(IFCs: international financial centres) 순위에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런던은 해외직접투자 프로젝트 건수, 대형 은행 수, 금융서비스 관련 기업 수 등을 반영한 금융서비스 시장의 규모 면에 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 여전히 독보적인 지위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0년에서 2017년 기간 동안 런던에서 타 지역으로의 FDI 프로젝트 건수는 총 739건으로 약 250억 달러에 달하며, 같은 기간 런던으로 유입된 FDI 프로젝트 건수는 총 304건으로 약 90억 달러 규모이고, 런던 소재 금융서비스 관련 기관은 총 4만 7,977개로 다른 국제금융센터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다. 국제금융센터 순위에서 7위를 차지한 파리의 경우 금융서비스 관련 기관이 33,088개이며, 26위인 서울은 14,786개로 집계되었다.

브렉시트에 따른 영국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히 위험요소로 잠재되어 있으나, 핀테크 기업에 대한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브렉시트 국민투표 이후 약 1,200명의 영국 내 주요 핀테크 기업 임원 및 CEO를 상대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영국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성장세와 유럽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생 핀테크 기업의 약 40%가 영국 내에 소재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브렉시트가 핀테크 산업계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국 핀테크 산업의 급격한 성장 배경에는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며, 정부의 적극적 지원에 따른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ecosystem) 구축이 핵심 동력으로 평가된다.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Ernst&Young(2016)이 주요국의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핵심 구성 요소별로 비교분석 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핀테크 허브 중 영국이 가장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갖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핀테크 에코시스템은 크게 인력(talent), 자본(capital), 정책(policy), 수요(demand) 등 네 가지 핵심요소의 부문별 수준에 따라 평가된다.

자본 부문에서는 캘리포니아가 1위, 영국이 3위를 차지했으나, 정책 부문에서 영국이 1위를 차지하면서 전체적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 과거 영국은 강력한 규제체제로 인해 핀테크 산업의 발전 수준이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매우 저조했으나, 최근 수년간 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하에 효과적 규제개혁과 민관협력을 추진한 결과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수준의 성장을 이뤘다.

주요 글로벌 핀테크 허브와 비교하여 영국이 핀테크 산업에 가장 우호적인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6년 5월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사는 미국 규제당국인 OCC(Office of Comptroller of the Currency)에 혁신 지원정책에 관해 제출한 의견서에서, 영국 FCA의 금융서비스 혁신 관련 정책을 모범사례로 제시하였다.

## 제2절 영국정부의 핀테크 산업 지원정책

### 1. 혁신적 규제환경 조성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영국은 기존 금융 감독체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2013년 4월 금융 감독체계를 건전성 감독기구(PRA)와 금융행위 감독기구(FCA)로 이원화하였으며,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FCA는 금융시장의 투명성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혁신적 핀테크 산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FCA는 2013년 설립 당시 핵심 운영 목표로 소비자 보호 강화,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 향상, 금융서비스 경쟁력 향상을 제시하였다. FCA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서비스 시장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편의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는 한편,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 육성에 주목하고 있다. 2015년 총선에서 지속적인 정책 목표로 혁신을 강조한 보수당 정권이 승리하면서 금융시장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혁신을 강조하는 정책 기조가 더욱 강화되었다.

FCA는 기업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전통적인 감독의 역할을 넘어,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들의 시장 진출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고, 신규 핀테크 상품의 출시 전 안전성을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FCA가 핀테크 산업 지원을 위해 2014년 5월 발표한 Project Innovate 이니셔티브는 혁신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관련 정책 및 행정절차를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Project Innovate의 주요 혁신정책으로 2014년 10월부터 신규 핀테크 사업 지원 프로그램인 Innovation hub를 운영 중이며, 2016년 5월부터 전 세계 최초로 혁신적 상품을 시험 운영하기 위해 안전한 규제환경을 제공하는 것이고, Regulatory Sandbox를 통해 핀테크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2. Innovation Hub

신규 핀테크 사업 지원 전담 부서로 신설된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는 핀테크 스타트업 및 기존 금융서비스 기업의 신규 사업 단위에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자 하는 경우,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기 위해 반드시 숙지해야 하는 규제 요건을 보다 쉽게 이해하도록 하고 이에 상응하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전 과정을 지원한다. 이노베이션 허브의 지원을 받기 위한 핵심 요건은 ① 기존 상품과 명백히 차별화되는 혁신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② 상품 출시로 인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만족시켜야 한다.

핀테크 기업의 사업 초기 단계에서부터 지원함으로써, 신규 핀테크 상품 출시에 수반되는 비용 및 위험을 낮추고 기업의 컴플라이언스를 용이하게 한다. 또한 새로운 상품의 출시 및 운영에 이르는 전 과정에 참여하는 다양한 주체간 의견 공유를 통해 피드백을 주고 받도록 함으로써 전체적 에코시스템의 원활한 작동을 지원한다.

2016년 2월까지 413개 기업이 신청했고, 이 중 52%가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어 이노베이션 허브의 지원을 받았으며, 18개 기업이 승인 완료, 21개 기업이 승인 단계를 밟고 있는 등 약 30%의 전환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한 지원은 사전 준비(pre-authorization) 단계, 승인 단계, 사후 지원 단계로 이루어진다. 사전 준비 단계에서 핀테크 기업이 신규 상품에 대한 FCA의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요건 및 규제 단계에서 발생하는 위험 또는 비용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승인 신청에 필요한 적합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핀테크 스타트업의 경우 복잡한 금융규제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며, 고비용의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구축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위한 직접적 컨설팅 지원은 규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는 데 유효하게 작용한다. 위 단계를 완료한 기업이 해당 상품에 대한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특화된 Project Innovate 승인 절차에 따라 심사가 진행된다. 승인을 완료한 이후 약 1년간 해당 사업에 대해 추가적 관리·감독을 수행한다.

이노베이션 허브를 통한 지원 프로그램은 신규 핀테크 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출을 도울 뿐 아니라, 규제 당국의 입장에서라도 규제 시스템에 대한 즉각적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므로 혁신 촉진을 위한 규제환경 개선에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된다. 또한 해외 금융당국과의 규제

협력 강화를 통해 영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혁신적 아이디어를 가진 해외 핀테크 기업의 영국 진출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한다.

2016년 3월과 5월 호주 및 싱가포르 금융당국과 각각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상대국 시장 진출을 원하는 혁신기업에 대한 상호 위탁 메커니즘(referral mechanism)을 수립함으로써, 해외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규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고 시간을 절감하도록 지원한다. 위탁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FCA의 이노베이션 허브에 상응하는 본국 금융당국의 자격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위탁이 이루어질 경우 승인 전 준비 단계부터 승인 후 1년까지 제도적 지원을 제공한다.

영국 재무부는 2016년 4월 글로벌 핀테크 허브로서 영국의 입지를 공고히 하기 위해 주요 해외시장과 ‘핀테크 브릿지(FinTech Bridge)’를 체결하여 영국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2016년 7월 한국 금융당국인 금융위원회와 핀테크 시장의 신규 트렌드 및 규제관련 이슈 등을 포함하여 금융서비스 혁신 사례를 공유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다.

### 3. 정부 지원 프로그램

영국정부는 런던에 디지털 기술 클러스터인 테크 시티(Tech City UK)를 조성하고, 주요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조성함으로써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에코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왔다. 영국 정부는 2010년 낙후되어 있던 런던 동부 지역에 디지털 신산업 및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IT 클러스터를 설립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및 보조금 지원 등 다양한 제도적 지원을 통해 런던을 세계적인 IT 도시로 탈바꿈하고자 노력해 왔다.

테크 시티는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구상되었으며, 현재 런던의 강점인 금융 및 서비스 산업의 특징을 살린 독창적 형태의 IT 기반 신

도시로 급부상하였다. 현재 실리콘밸리, 뉴욕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디지털 클러스터를 형성하고 있으며, 테크 시티의 비즈니스 성장률은 40%로 런던 전체보다 17% 높은 성장률을 보인다.

금융 및 핀테크 허브로서 런던의 성장 요인 중 하나는 우수한 법적 체계와 함께 풍부한 도시 문화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이 지역에 살고 싶어 한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영국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의 고용 인력은 2015년 말 기준 총 156만 명이며, 2008년 이후 생겨난 기업의 50%, 2013~14년 사이 생겨난 기업의 15%가 디지털 기술 관련 기업이다.

영국정부는 2015년 하반기 예산안에서 2020년까지 핀테크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목표로 디지털경제 및 관련 기술 연구를 수행할 6개의 새로운 종합연구센터에 대한 자금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테크 시티는 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해외로부터의 투자유입 확대, 주변 지역으로의 발전 확산이라는 세 가지 전략 하에 추진되었다.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기술 교육, 자본 조달, 정책 지원 등 디지털 기업 창업 및 운영에 필요한 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창업 또는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비즈니스 아카데미에 2015년 11월 기준 11,000명이 참여하고 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상위 50개의 디지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 프로그램(Future Fifty)을 통해 네트워크 형성, 개인 또는 기관 투자자 연계, 브랜드 이미지 향상 등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였다.

테크 시티는 영국 내무부(UK Home Office)에 의해 Tier 1 Exceptional Talent Visa(특별 재능 소지자를 위한 비자 종류)를 승인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 받은 5개 기관 중 한 곳으로, 비EU권의 우수한 기술 인력 유치에 노력하고 있다. 2014년 4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총 257건의 지원서를 받았으며, 이 중 76%인 181건에 대해 보증

(endorsement)을 발급하였다. 지원자의 1/3이 여성이며, 지원자의 42%가 아시아 태평양 지역, 28%가 유럽·아프리카 지역, 24%가 북미지역에서 온 것으로 나타난다.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IT 인력을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프로그램 개발자 등에 대한 영국 내부적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 비EU권 인력을 위한 비자유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최근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테크 시티에 참여하고 있는 50개의 디지털 기업은 2016년 10월 영국정부에 보낸 서한에서 유럽의 우수한 인력을 유치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요청하였다.

런던에 집중된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고자 2015년 ‘Tech North’ 이니셔티브를 시작하여 잉글랜드 북부 지역의 핀테크 산업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에든버러, 맨체스터, 리즈 등 북부 거점 도시에 핀테크 허브를 형성하여 전국적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지역 거점 도시들은 런던에 비해 낮은 주거비용, 넓은 사무실 공간, 상대적으로 낮은 인재유치 경쟁, 그리고 지역에 따라 우수한 교육 네트워크 등의 이점을 활용하고 있다. 2014년 기업공개(IPO)가 이루어진 대규모 기술 기업 중 두 개가 맨체스터에 위치해 있다. 영국정부는 지역 핀테크 허브를 설립하고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를 운영하고 있으며, 2010년 이후 이에 대한 투자 및 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

국영 경제개발은행인 영국기업은행(British Business Bank)은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며, 2014년 4월 핀테크를 포함한 중소기업에 대출하기 위해 추가로 1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조성하였다. BBB에 의해 지원되는 UK Angel Co-Fund 프로그램은 1억 파운드 규모의 자금을 성장 가능성이 높은 영국기업 또는 비즈니스 엔젤 투자시장에 투자

하기 위한 기금으로 조성하였다.

Innovate UK는 자금 지원 프로그램으로, 중점 육성 과학기술 분야의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세제 관련 혜택을 통해 개인 및 기업의 핀테크 스타트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벤처 및 R&D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Seed Enterprise Investment Scheme(SEIS)은 스타트업 프로젝트에 투자한 개인의 세금을 감면해 줌으로써 위험하다고 여겨질 수 있는 벤처 사업에 대한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3,900개의 기업이 총 3억 3,800만 파운드의 투자를 유치하였다. Enterprise Investment Scheme(EIS)은 소규모의 고위험 트레이딩 회사의 주식을 매입한 투자자에게 일정 범위의 세금 감면을 제공함으로써 소형 기업의 자금 조성을 지원하며, 이를 통해 지난 2년간 총 5,950개 기업이 32억 파운드 이상의 자금을 조성하였다.

### 제3절 영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 1.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

2014년부터 영국에서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시작된 “규제 샌드박스(Regulatory Sandbox)는 미국의 가정집 뒤뜰에서 어린이가 다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모래통에서 유래되었고, IT 용어에서는 보호된 영역 내에서 프로그램을 동작시키는 것으로 외부 요인에 의해 악영향이 미치는 것을 방지하는 보완 모델로 설명하고 있다.

FCA는 2016년 5월부터 핀테크 기업이 혁신적인 새로운 금융서비스 상품을 규제에 제한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하는 Regulatory Sandbox 프로그램을 시행하였다. 혁신적 상품,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 등을 실제 환경에서 해당되는 모든 규제요건에 적용 받지 않고 일정 기간 동안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장의 혁

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위험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하기 위함이다.

2016년 5월 9일부터 7월 8일까지 1차 신청을 받았으며, 11월부터 2017년 1월 중순까지 2차 신청을 받았다. 비승인 기업( unauthorized businesses)의 경우 테스트 목적의 완화된 승인요건을 적용 받게 됨으로써 승인을 얻기 위해 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 단, 은행 인가(banking license)를 원하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되며, 이 경우 스타트업 은행을 위한 별도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승인 기업( authorized businesses)은 해당 프로그램을 통해 기존의 규제체계에 쉽게 적용되기 어려운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한 명확한 규정을 제공 받을 수 있다. 개별 가이드라인: 테스트 관련 규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기업이 해당 가이드라인 내에서 운영하는 한 컴플라이언스를 만족한 것으로 간주한다.

만약 새로운 상품의 테스트가 기존 규정을 위반하게 될 경우, 프로그램의 목적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해당 규정을 면제 또는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단, 국내법 및 국제법은 대상에서 제외됨). 또한 대상 기업들이 테스트를 위해 사전 합의된 규정을 준수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징계조치하지 않도록 보장한다. 단, 위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 테스트 기간 동안에만 제한적으로 적용되며, 소비자에 대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은 아니다.

또한 FCA의 규제 대상 기업에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의 경우 서비스 제공 시 적용되는 규정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받을 수 있다.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조건은 각 건별(case-by-case)로 사전 합의되며, 해당 기업들은 주 1회 진행 상황, 주요 결과, 위험 관리 현황에 대해 규제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FCA는 테스트에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표준

테스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테스트 기간이 완료되면 4주 이내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에 대해 FCA는 서면으로 피드백을 제공한다. 단, 이 과정을 통해 FCA가 비즈니스 모델을 인증해 주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를 승인해 주는 것은 아니다.

그 밖에도 핀테크 기술을 규제 시스템에 도입함으로써 규제 및 컴플라이언스에 소요되는 비용을 절감하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RegTech)을 추진하는 등 지속적으로 핀테크 기술 개발의 활성화 및 금융서비스 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영국에서 시작된 샌드박스는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홍콩, 싱가포르, 스위스, 호주, 캐나다 등 여러 나라에서 유사한 형태로 도입하고 있다. 2016년 9월 홍콩 통화당국은 핀테크 감독 샌드박스(Fin-Tech Supervisory Sandbox, HKMA Sandbox)를 출시한다고 발표하였다. HKMA Sandbox는 시험기간 동안 HKMA의 일반적인 규제 요구사항을 완전히 준수하지 안해도 은행이 핀테크 및 기타 기술에 대한 파일럿 시험을 통제된 환경에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2016년 11월 싱가포르 금융감독청(MAS)은 핀테크 규제 샌드박스 가이드 라인을 규제 샌드박스에 진입하고자 하는 신청자를 위해 신청서 양식과 함께 발급하였다. MAS는 금융분야에서 혁신적이고 안전한 기술의 채택을 장려함으로써 싱가포르를 최상의 금융중심지로 변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 2.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 정책동향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금융행위규제기구(FCA)가 소비자 편익 향상과 기업 간 경쟁 촉진을 위해 ‘Project Innovate’의 일환으로 도입한 규제정책이다. 여기서 ‘Project Innovate’는 미국의 소비자금융보호국(CFPB)이 2012년에 시작한 ‘Project Catalyst’를 모델로 고안한 것이다.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의 ‘Project Catalyst’의 특징은 은행계좌를 가지고 있지 않은 계층의 금융 접근도의 개선과 소비자의 결제의 편리성을 향상시켜 소비자 중심의 데이터를 기반한 의사결정과 실험 프로젝트를 포함하여 진행하고 있다. 이후 영국은 미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험프로세스의 과정에서 보다 선도적인 프레임 워크를 고안하여 사용하였다.

영국은 혁신적인 금융 서비스의 ‘실험의 장’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시작하였다. 핀테크 산업 및 시장을 발전시키기 위해 정부주도로 정부와 민간 기업이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혁신적인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행법을 한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실험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실시하였다.

영국은 2014년 런던을 ‘Global FinTech Capital’로 발전시킨다고 선언하고 전략적으로 핀테크 분야 육성을 추진해 왔다. 역사적으로 2010년 11월 카메론 총리가 미국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한 ‘TechCity 구상’을 통해 만들어진 런던 동부지역이 IT 벤처로 성장하였고, 이러한 배경으로 금융기관의 IT 기업이 위치하게 되면서 핀테크가 성장하였다.

민간부분에서는 벤처기업을 육성하는 인큐베이션 시설로서 2013년부터 ‘Level 39’가 핀테크 기업을 상대로 오피스를 제공해주면서 시작되었다.

2014년에 설립한 영국 핀테크 기업들의 단체인 ‘Innovate Finance’나 Accenture의 ‘Finance Innovate Lab’ 등의 액셀러레이터가 핀테크 기업을 포함한 스타트업 기업을 대상으로 법무, 재무 등의 지원이나 자금투입 등의 각종 지원책을 제공하였다. 실제 영국의 핀테크 관련 비즈니스는 200억 파운드의 경제 가치와 13.5억 명의 고

용 효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0억 파운드 중에서 36억 파운드는 ‘파괴적 핀테크’ (소규모이고 혁신적인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이 기존 금융 서비스 기업을 넘어서는 것)로 추산하고 있다.

‘Project Innovate’ 는 기존 비즈니스 모델에 도전하는 ‘파괴적 혁신(Disruptive Innovation)’ 을 통해 경쟁력을 촉진해 왔다. FCA의 ‘Project Innovate’ sms 금융부분에 있어 소비자를 위해 이노베이션을 촉진하거나 새로운 소비자를 위한 서비스 제공하고 있다. 사업자와 대화를 통해 혁신추진에 방해가 되는 규제 등을 조정하고 새로운 서비스에 대한 법률의 적용에 관한 사전확인 등을 지원하고 있고, 실제 시작한지 년이 지나고 기존 175개사를 넘은 회사를 지원하고 있고, 5개의 사업자가 실제 승인을 받는 등의 성과를 올리고 있다.

이 프로그램에는 ‘비공식 조언(Informal Steer)’ 을 통해 사업자에 대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프로젝트의 경쟁촉진 효과를 높이기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위한 5개의 시책을 아래와 같이 책정하였다.

- ① Regulatory Sandbox : 혁신적 금융상품·서비스 등의 제공을 통해, 사업자에 대해 현행법을 일시 적용하는 것이 아닌, 안전한 실험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이노베이션을 촉진하는 제도
- ② Themed Weeks : 이노베이션의 발전이나 트렌드의 이해를 지원하기 위해, FCA와 관련자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로 관련자가 함께 만나 특정 테마에 대해 규제 상 문제 등을 배우는 장으로써 첫 회의의 테마는 ‘로봇 어드바이저’ 였다.
- ③ RegTech : 사업자가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나 이용에 대해 싸고 간단한 방법으로 규제에 맞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④ The Cloud : 사업자가 규제에 맞게 해나가고, 클라우드에 정보를 넣

어 놓는 것이 가능해지기 위해 새로운 지침을 표시하는 것으로 혁신적 사업자가 찾는 비용대비 효율이 높은 비즈니스 모델을 설계하기 위해 많은 사업자가 제기하는 우려를 대처

- ⑤ Call for input on Barriers to digital and mobile solutions : 금융서비스를 위한 디지털·모바일 솔루션의 혁신을 제한하고 있는 것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되는 특정 법과 정책을 이해하기 위한 조직

FCA는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기준을 통해 혁신적인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규제 샌드박스는 ① 금융상품·서비스가 시장에 나올 때까지 시간과 잠재적 비용의 절감, ② 자금조달에 관한 접근 개선, ③ 좀 더 많은 혁신적 상품의 시장화라는 3가지 잠재적 이점을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이는 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시장화되기 전에 새로운 상품과 서비스를 실현하고 소비자가 겪을 수 있는 리스크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도록 한다. FCA는 5가지 기준을 설정하여 모든 기업에게 공정하고 투명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고 소비자의 이익의 측면에서 설정하고 있다.

### 3. 규제샌드박스의 도입 이점

시장에 출시할 때까지 시간과 잠재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지연은 혁신가에게 커다란 영향을 준다. 다른 업종의 사례에는 규제의 불확실성이 가져오는 지연은 시장화까지 시간을 약 1/3, 상품의 비용을 생애수익의 약 8% 증가하게 한다.

자금조달에 관한 접근을 개선할 수 있다. 기업의 성장에 있어 중요한 단계를 위해 규제의 불확실성은 FinTech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어렵게 하고, 기업 가치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이 된다. 다른 업종의 사례로는 규제의 불확실성 때문에 약 15%의 기업 가치를 저하시키고, 자금조

달을 전부 하지 못한 회사의 수를 예약할 수 없는 것이 어려움을 초래한다.

좀 더 많은 혁신적 상품의 시장화를 촉진시킨다. 규제의 불확실성에 의해 초기단계에 이노베이션이 어려워 실험도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Regulatory sandbox에는 실험단계에 규제리스크의 관리를 가능하게 해서 결과로써 다양한 솔루션이 실험되고 시장화 하는 것이 가능해 졌다.

#### 4. 규제 샌드박스의 적용기준

- ① 사업자의 범위 : 사업자가 계획하는 새로운 솔루션이 금융서비스업 또는 지원하는 것인지?
- ② 물건의 이노베이션 능력 : 사업자의 새로운 솔루션이 참신함이 있는지, 기존의 것과는 다른 것이 있는지?
- ③ 소비자 이익 : 소비자에 명확한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지?
- ④ Regulatory sandbox의 필요성 : 실험의 목적은 무엇인지? Regulatory sandbox의 구조로 실험하고 있는 것이 정말 필요한지?
- ⑤ Pack Cloud 조사 : 새로운 솔루션의 발전, 적용되는 규제의 이해, 리스크의 완화를 위해 적절한 자원을 투자하고 있는지?

FCA는 정부보다도 민간이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민간 사업자가 공동으로 실험환경을 만드는 것이 가능한 시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시책은 2가지 선택지로 구성되는데 ‘Virtual Sandbox(가상적 실험환경)’ 과 ‘Sandbox umbrella(비영리기업의 보호)’ 이다.

‘Virtual Sandbox’ 는 현실시장에 참가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상품이

나 서비스 실험에 참가하기 위해 실험용 가상적 환경을 제공하는 것이다. ‘Virtual Sandbox’ sms 자사 내에 실험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어려운 소규모 스타트업 기업에 유용하다. ‘Sandbox umbrella’ 는 비영리 기업(Umbrella company)의 보호와 미인허가의 사업자인 지정된 대리인 (appointed representative)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허가하기 위한 선택지이다.

## 5. 규제 샌드박스의 구성과 절차

규제 샌드박스의 구성과 절차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사업자가 새로운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이러한 비즈니스 아이디어를 방해하는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관한 신청이 이루어진다. 신청을 받은 FCA는 내용을 조사하고 규제 샌드박스에 적용기준을 만족하는가를 평가한다.(이 단계에서 규제의 우려점이 해결되는 케이스도 있다.)

그 다음에 사업자와 FCA 간의 실험수법을 협의하고 규제완화의 단위, 대상이 되는 고객층, 실험기간, 개선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KPI(Key Performace Indicator, 핵심성과지표) 등을 합의한다. 이러한 KPI에는 정량적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요구된다.

## 제3장 한국의 금융규제 정책의 변화

### 제1절 한국의 핀테크 산업 현황

#### 1. 국내 주요 핀테크 스타트업 사례

##### ① 비바리퍼블리카 - 간편송금 사업 이후 결제시장 진출

수수료 없는 간편 송금 어플리케이션 토스(toss)를 개발하여 송금시장의 점유율을 급속히 확대중이다. '14. 6월, 38억 건 정도였던 누적 거래량이 불과 2개월 후 100억 건에 달하였다.

현재 IBK기업은행, NH농협은행, 새마을금고, 부산은행, 경남은행, 우체국, 광주은행, 전북은행, 신한 등 9개 은행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히 벤처캐피털(VC) 업계의 관심도 지대하여 KTB, 알토스 벤처스 등 4곳에서 50억원 유치에 성공하였다.

특히 기존 온라인 결제 대행 업무 과정을 기존 결제업체보다 대폭 간소화하면서 결제 관련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다.

통상 기존 가맹점들이 결제 모듈을 쓰기 위해서는 보증보험을 끊고 계약서 날인을 하는 등 번거로운 과정을 거쳐 최소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가맹점들이 결제 홈페이지에 와서 이용약관 동의와 같은 절차를 거치면 결제 모듈을 쓸 수 있도록 신청 과정을 간편하게 하여 소요 시간을 1시간으로 단축시켰다.

특히, 신용카드 결제가 아닌 계좌 기반 결제여서 수수료가 신용카드 대비 절반 정도이고 게다가 통산 6~8일 정도 걸리는 신용카드 정산과 달리 정산도 하루 만에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다.

다른 핀테크 스타트업과의 체류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이머사기 범죄 방지 시스템을 개발한 더치트와 제휴해 토스의 간편 송금

시스템에 타재하여 안정성과 보안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P2P(Peer to Peer) 업체들과 손잡고 투자상품 제휴도 검토하고 있다. 토스 이용자들이 대출 상품에 투자해 투자자를 모으고, 투자자에게 8% 정도의 중금리 이윤을 보장받는 식이다.

## ② 8퍼센트 - 중금리 대출 시장 개척

P2P 대출업체 8퍼센트는 대출자와 투자자를 연결해 직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플랫폼으로 새로운 재테크 문화를 만들고 있다. 별도의 중간 수수료 없이 매주 수요일 정오에 플랫폼을 통해 새로운 대출상품을 공개하고 투자자를 모집하고 있다. 대출금리는 1금융권보다 높은 8~10%대 금리를 적용하여 투자자 입장에서 은행권보다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비대면 채널의 특성상 대출자의 신용 검증에 대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대출자의 신용등급, 소득, 생활비 나아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꼼꼼히 확인하여 대출상환 능력이 충분한 지 검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출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대출신청 건수 대비 약 5% 정도에 불과하다. 또한 자체 윤리강령을 제정하는 등 이해상충 방지 노력도 경주하고 있다. 내부 직원의 경우 임직원 관련 투자상품에는 투자하지 않고, 관계사나 지인과 관련된 상품을 만들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지하고 있다.

다만, 금융회사가 아닌 8퍼센트를 규정할만한 금융감독 관련 법이나 제도가 명확하지 않아 규제공백과 향후 사업 불확실성 우려가 있는 기다.

## ③ 뉴지스탁 - 퀀트로 상장주식 전 종목 분석

뉴지스탁은 개인 투자자를 위해 상장된 전 종목을 부덕하는 업체이다. 금융공학기법 중 하나의 퀀트(계량분석)를 주식분석에 활용한 것이

다. 쿼트는 사람의 판단을 최대한 배제하고 통계분석을 통해 얻은 계량된 자료를 바탕으로 종목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정량적인 데이터와 분석, 알고리즘을 통해 상장된 전 종목을 분석하고, 분석 결과는 ‘점수’와 ‘기상도’로 알기 쉽게 표현하고 있다. 종목 추천 서비스인 모델 포트폴리오의 수익률은 연평균 90%가 넘으며, 약세장에서도 주요 벤치마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

검증된 수익률을 바탕으로 현재 키움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대신증권, SK증권, 현대증권 등 5개 증권사와 제휴 중이다.

#### ④ 레이니스트 - 개인 맞춤형 신용카드 추천

레이니스트의뱅크샐러드는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개인의 소비성향에 따라 가장 적합한 신용카드를 추천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회사별 신용카드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체계화하여 빅데이터를 정교하게 가공하여 분석 결과의 신빙성을 제고하였다.

신용카드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25만 개 혜택을 250종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관련 알고리즘과 비즈니스 모델은 특허 등록이 되어 있다. 이용자의 소비 관련 정보가 쌓여 대시보드에서 소비성향을 분석해 가장 적합한 카드를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주요 은행 등과 제휴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IBK기업은행과 손잡고 신용카드 추천앱을 출시했고, 현재 신용카드 데이터와 비콘을 연계하여 어느 장소에 가면 어떤 카드를 써야 하는지 알려주는 서비스도 출시하였다.

레이니스트는 금융권의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가 열리면서 스마트한 자산관리에도 사업을 진출시켰다. 상황에 따라 바뀌는 소비자의 소비패턴을 앱이 자동으로 분석해주고 그때마다 갈아타기에 적당한 금융상품을 추천해주는 방식이다.

## ⑤ 디바인랩 - HTS처럼 쉬운 비트코인 거래소

디바인랩의 비트코인 거래소 시스템 고인원은 별도 프로그램을 깔지 않아도 웹상에서 거래를 할 수 있다. 기존 비트코인은 거래소는 일반 웹사이트에 가가운 형태지만 코인원은 실시간으로 바뀌는 시세를 확인하고 거래할 수 있는 주식 홈트레이딩 시스템(HTS)에 가까우며 초당 수 천 번의 거래가 가능하다.

특히, 코인원은 국내 최초로 멀티시그월렛을 도입해 해킹 시 보안 걱정을 크게 완화시킬 수 있다. 멀티시그월렛은 개인 키를 3개로 쪼개고 3개 중에 2개가 있어야 출금이 가능하게 만든 시스템으로 키 2개는 이 사용자가, 남은 하나는 디바인랩이 보관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 비트코인은 거래할 때 쓰는 개인 키를 보관하는 것이 핵심인데, 거래소에 있는 오리지널 키를 해킹당하면 비트코인을 전부 잃어버릴 수 있다. 최근 비트코인의 핵심 기술 중 하나인 블록체인 기술(공개된 변종 불가능한 장부)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수수료 가격 경쟁력 차원에서 향후 급속한 정상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신용카드의 경우 해외 결제는 상인 수수료가 3% 이상이고, 이용자 역시 1% 정도의 수수료와 별도의 환전 수수료를 내게 되지만 비트코인 결제는 국내외 상관없이 1% 정도의 수수료가 일반적이다.

## ⑥ 더치트 - 사기 범죄 데이터로 금융사기 예방

금융사기 범죄 고발녀 빅데이터를 통해 또 다른 범죄를 막는 핀테크이다. 약 17만건이 넘는 등록된 사기 정보를 기반으로 더치트는 계좌 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기본 값으로 10여 가지 데이터를 수집한다. 최근 10년간 통계를 살펴본 결과, 범죄에 사용된 계좌번호는 최소 2회 이상 사용되고 있는 최초 피해는 막지 못해도 추가 피해는 어느 정도 방지가 가능하다. 특히, 알고리즘 분석을 통해 주의가 필요한 내용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예컨대 A가 연락처를 변경했을 때 바뀐 정보를 찾아내는 것도 가능하다.

더치트는 간편 송금 서비스를 하는 비바리퍼블리카와 제휴 중이다. 다만, 피해자들이 등록한 개인정보 활용문제와 관련해 아직 법적 불확실성 직면 중이며, 보다 광범위한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은행 등 대형 금융회사와의 제휴가 필요한 상황이다.

## 2. 은행권의 핀테크 대응노력

핀테크 열풍에 발맞춰 국내 은행들도 다각적인 대응노력을 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인 은행의 경쟁력 유지를 위해 신생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제휴 및 지원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 ① 핀테크 오픈 플랫폼 제공

은행들은 자신들의 플랫폼을 스타트업에 공개하고 이를 평가하여 기존 IT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활용 중이다. 핀테크 기업 입장에서도 공개된 오픈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자체 서비스를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은행의 경우 기술력 있는 핀테크 기업을 따로 찾아 나서지 않아도 스스로 아이디어를 들고 찾아오기 때문에 서로 상생이 가능하다.

- ① NH농협은행 : 웹케시와 핀테크 오픈 플랫폼 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표준화된 금융 API를 제공하고 있다. API는 운영체제와 응용 프로그램 사이의 통신에 사용되는 언어나 메시지 형식이다.
- ② IBK기업은행 : 핀테크 기업과 공동 개발한 모델을 적극 적용 중이다. i-ONE뱅크는 핀테크 기업이 자신의 서비스를 i-ONE뱅크에 쉽게 연결하고 탑재할 수 있도록 확장형 플랫폼 구조로 설계되어 있다. i-ONE뱅크에 탑재된 대표 사례는 사기거래 방지 솔루션을 보유

한 더치트의 서비스로 수취인 예금계좌가 서기거래 및 보이스 피싱 등에 활용됐는지 검증하고 있다. 나아가 IBK기업은행은 핀테크 스타트업과 오픈형 API도 개발할 방침이다. IBK기업은행은 전자금융 솔루션 제공기업인 웹케시와 핀테크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오픈 API 금융 플랫폼 등 신사업을 진행 중이다.

## ② 자체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스타트업 지원

은행 자체의 핀테크 지원센터를 통한 기술 스타트업 지원도 활발하다. 은행들은 자체 지원센터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위한 멘토링 및 육성 프로그램과 사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새로운 사업모델이나 프로그램 개발 시 이익 공유 협약 등을 서로 사전에 마련하기 위해서 공동유인(win-win) 추구에도 기여하고 있다.

① 우리은행 : 핀테크 전담 사업부를 내부적으로 신설하여 다양한 핀테크 사업 모델 발굴 및 검증 중이다. 특히,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과 다양한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사기거래 피해예방 대응을 위해 집단지성 활용 사기방지 솔루션 스타트업 더치트와 업무제휴를 체결하고 사기피해자 제보 등에 근거해 계좌이체 시 상대방 계좌가 사기이력이 있는지 실시간으로 분석, 공지해 사기 방지 노력을 하고 있다.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별도의 채널로 일대일 컨설팅을 통한 사업화 지원, 외부기관 연계 컨설팅, 핀테크 사업 아이템 경연, 세미나 모임 개최 등을 통해 다각적으로 핀테크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② KB국민은행 : KB핀테크 HUB센터를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 상담부터 기업공개(IPO) 지원까지 단계별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중이다. 핀테크 관련 유망 중소벤처기업에 15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계열사와 연계한 성장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이뤄지는 스마트 인증분야를 주제로 실수요를 가진 계열사를 참여시켜 실질적 협력 가능성

을 검증하였다.

- ③ 신한은행 :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 신한 퓨처스랩을 가동하였다. 신한 퓨처스랩 프로그램을 통해 유망 핀테크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하고 약 12주간의 멘토링을 제공한 뒤 시장에 선보일 계획이다.

### ③ 정부 협업 핀테크 지원센터 참여

정부 차원에서 설립 운영 중인 핀테크 지원센터에 국내 은행이 참여하여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및 유망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있다. 핀테크 지원센터는 멘토링을 기반으로 우수한 핀테크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금융회사와 연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핀테크지원센터를 통해 MOU를 체결한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는 아래와 같다.

- ① 위즈도메인과 현대증권 : 핀테크 기업 기술을 바탕으로 한 투자금 시범운용 관련 업무 제휴
- ② (주)핀테크와 하나은행 : 신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공동 상품개발 진행
- ③ (주)더치트와 우리은행 : 핀테크 기업의 시장 정착을 위한 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모델 및 신규 사업기회 창출, 사기거래 피해예방 대응모델 구축
- ④ 이리언스와 기업은행 : 비대면 바이오 인증 기술을 활용한 전자금융보안 강화 및 거래고객 편의성 증대 사업의 도입 및 정착

## 제2절 규제 완화를 제도적 노력

### 1.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제정

#### 가.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제도 : 규제 샌드박스

##### ①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신청

신청자격은 핀테크 기업(상법상 회사)과 금융회사이다. 신청 서비스는 기존 금융서비스와 제공 내용·방식·형태 등의 차별성이 인정되는 서비스에 한한다.

##### ② 혁신금융서비스 심사·지정

심사·지정은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되, 산하에 혁신금융서비스의 심사를 위한 ‘혁신금융심사위원회’ 설치하고, 위원장은 금융위원장, 위원은 금융위 공무원, 관계부처 차관, 기술·금융/법률/소비자분야 전문가(각 분야 1인 이상 포함) 및 시행령에서 정하는 자로 총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심사기준은 ① 서비스의 혁신성 ② 소비자 편익 증대여부 ③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적용의 불가피성 ④ 사업자의 업무영위 능력 ⑤ 금융소비자보호방안의 충분성 ⑥ 금융시장 및 금융질서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이다.

##### ③ 혁신금융서비스 지정의 효과

지정받은 기간 내에 영위하는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는 특례가 인정된 해당 금융규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인허가·등록·신고, 지배구조·업무범위·건전성·영업행위, 사업자 감독·검사 등 금융관련법령 규제 전반에 대해 폭넓게 특례 인정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타 부처 소관 법령의 규제특례는 법령 소관부처의 동의를 받아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소비자에 회복 불가능한 피해 발생 우려, 금융질서 안정성 저해 우려 등이 있는 경우, 특례인정이 불가능하다.

#### ④ 혁신금융사업자에 대한 감독 및 소비자보호

테스트 환경에 적합하게 구성된 특별법 규정 적용하도록 한다. 예를 들어, 지정내용을 벗어나서 테스트를 실시한 경우 지정취소, 형사처벌 등 제재하는 방식이다. 혁신금융서비스 제공 현황을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피해, 금융시장 혼란 우려가 있을 경우 지도·시정하도록 한다. 소비자 피해 발생 등 비상 상황시 중지명령, 변경조치를 해야 한다.

사업자에게 소비자보호 및 위험관리 방안을 마련토록 하고 방안이 충분한 경우에만 테스트 허용하도록 한다. 사업자는 혁신금융서비스 신청 시 소비자보호 방안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용자의 범위 제한, 거래위험 고지, 분쟁처리 절차 마련 등을 포함한다.

사업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용자의 입증 부담을 완화(입증책임 전환)하고 사업자의 배상여력이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 이행 보장장치 마련하도록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조항은 정무위 논의 과정에서 삭제하고,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나, 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입증책임이란 민사소송원칙에 따르면 손해배상요건을 충족함을 소비자가 입증해야 하나, 입증책임 전환 시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함을 사업자가 입증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당초의 원안은 무과실배상책임을 규정하였으나, 정무위 논의 시 산업융합법, 지역특구법 등 여타 규제샌드박스 법안과 동일하게 ‘입증책임 전환’으로 수정하였다.

## ⑤ 테스트 종료 후 후속조치 : 검증된 서비스의 시장 안착 지원

테스트 기간(최대 2년 이내에서 지정 시 결정) 종료 시 규제특례는 원칙적으로 종료된다. 기타 종료 사유로는 지정 취소, 합병 등으로 인한 조직변경, 자진철회 등이 있다. 다만, 필요성 인정 시, 1회에 한해 최대 2년 연장가능하다.

인허가 심사 지원 및 제도개선 신속 추진 중이다. 테스트기간 중 인허가 또는 등록요건 일부가 충족되었음을 확인한 경우 의견제시 등을 통해 심사 절차 지원한다. 시범서비스의 정식 시장출시를 위해 관련 법령 제개정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혁신심사위원회가 입법조치 권고할 수 있다. 혁신금융사업자는 인허가 완료 후 최대 2년 이내에서 다른 사업자가 동일 서비스를 출시할 수 없도록 요구할 수 있다.

나. 기타 제도 : 지정대리인 제도, 규제신속 확인제도

### ① 규제신속 확인제도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규제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금융위에 해당 서비스와 관련된 법령 등\*의 적용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법령, 행정규칙, 그 밖에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모든 규정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소관 법령 등에 대해서는 직접, 다른 행정기관 소관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의견을 받아 신청인에게 회신해야 한다. 특히, 그간 타부처 소관에 대해서는 비조치의견서 제도를 적극 활용하지 않았으나, 금융혁신법 제정시 윈스톱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 ② 지정대리인 제도 : 본질적 업무 위탁 허용(제25조)

금융위원회는 서비스의 혁신성, 소비자 편익 등이 인정되는 경우 서

비스를 테스트하려는 핀테크기업을 지정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지정대리인의 테스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정대리인에게 본질적 업무 위탁 가능하다. 금융회사는 업무위탁자로서 수탁자인 지정대리인을 관리·감독하여 이용자 피해 및 위험발생 방지하고자 함이다.

#### 다. 혁신금융서비스 예산 지원 근거 마련

혁신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을 통해 핀테크기업 등에 대해 지원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등으로 혁신적 금융서비스 지원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는 근거 마련하였다.

## 2. 신용정보법 개정

### 가. 개정 배경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추심업무 위탁 금지 규정을 신설하는 등으로 「신용정보법」이 개정되어 ' 18.5.29일부터 시행되었고,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등 대통령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금융회사가 개인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 나. 신용정보법 개정안 주요 내용

#### □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라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 (1)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위탁이 금지되는 자의 범위 (안 § 24의2)

- (개정법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신금융기관 등에게 무허가 추심업자에 대한 채권추심업무의 위탁을 금지

- (시행령안) 무허가 추심업자에 추심업무 위탁이 금지되는 자를 은행, 저축은행, 보험회사, 여전사, 대부업자 등으로 정함

(2) 개정 「신용정보법」( § 27⑨) 위반에 대한 과태료 기준금액

- (개정법률) 채권추심회사 소속 위임직 채권추심인의 「채권추심법」 위반 시, 채권추심인 외에 이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는 채권추심회사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시행령안) 채권추심인의 불법추심시 채권추심회사에 부과되는 과태료 기준금액을 법률상 한도액의 80%로 정함

②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목적 확대(안 § 13)

- (현행) 보험회사·채신관서·공제사업자가 보험업·우체국보험사업·공제업무를 하는 경우에만 개인의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 (개정) 카드사가 질병에 관한 여신금융상품을 취급하는 경우 및 금융회사가 금융소비자에게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경우에도 질병정보 이용을 허용

\* DCDS(Debt Cancellation & Debt Suspension) : 신용카드회원으로 부터 수수료를 받고 회원의 질병 등 사고 시 카드대금채무를 면제·유예해주는 상품

\* 질병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은 감독규정(금융위 고시)에서 정할 계획

### ③ 제도개선 효과

질병 관련 위험을 보장하는 다양한 금융상품 제공 기반이 마련되고, 금융회사가 질병정보를 이용해 금융소비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어, 금융회사가 중증질환자에게 우대 금리를 제공하려는 경우에 진단서 등을 통해 질병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3. P2P 대출 법제화 추진

### ① P2P 대출 법제화의 필요성

P2P대출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신속한 법제화 필요하다. P2P대출 시장규모가 그동안 크게 성장하였다.( '16년말 4천억 → '18.9월 4.3조)

최근 금감원 실태조사 결과(연계대부업자 178개사 대상), P2P대출이 그간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으로 성장해 왔으나, 한편으로는 사기·횡령 및 불건전 영업행위도 다수 발견 → 소비자 보호 시급

허위상품 및 허위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한 사기·횡령 사고 다수 발견되었다. 대주주 자기사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 P2P 대출 이용,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고객정보 보호장치 허술 등으로 투자자 피해 우려가 있다.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하여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을 과다 지급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 ② P2P 대출 법제화 입법형식 :

별도의 법률을 제정할 것인지, 대부업법, 자본시장법 등 종전 법률을 개정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였으나, 별도의 법률 제정 필요한 것으로

결정되었다. P2P대출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여 차입자에게 대출하는 새로운 금융업이므로 별도의 법률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투자자·차입자를 동시에 보호하고 P2P대출 업무 방식의 특수성을 기존의 법 체계로 규율하는데 한계가 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자 보호 체계로 차입자 보호에 한계가 있으며, P2P대출의 원리금수취권은 전통적인 증권의 개념과 상이하다.

- 차입자에 대한 P2P업체의 설명의무, 차입자에 대한 P2P업체의 손해배상 책임 등
- (증권)유통가능성을 전제로 한 시장위험, (원리금수취권) 차입자 채무불이행 등 신용위험

대부업법은 투자자 보호에 부족하며, P2P대출은 대부중개업과 차이가 있다.

- P2P업체는 투자자·차입자 모집뿐만 아니라, 원리금수취권 발행, 채권관리 등 수행

기존 법들과 상충이 발생하지 않도록 타법 적용 여부나, 적용 범위 등에 대해 단일화된 조율체계 필요하다. P2P대출이 발전한 영국도 P2P대출을 독자적인 금융업으로 규율하고 있다.

의원별 법안, 업계 의견 등을 고려하여 P2P 산업 발전과 소비자보호 달성을 위한 종합적 대안을 정부차원에서 마련할 필요가 있다. P2P대출 거래 구조/진입 요건/P2P업체 자기자금 투자/중개수수료 수취/대출 및 투자한도 등을 포함한다.

#### 4.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 방지를 위한 「금융규제 운영규정」 개정·시행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행정지도에 대한 사전·사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가. 개정 배경

금융위원회는 ‘18.12.19(水) 제22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금융규제 운영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하고 ’19.1월중 발령·시행할 예정이다. 그간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운영규정」을 제정·시행(‘15.12.31)하여, 비공식적으로 금융회사 등을 규율하는 금융행정지도의 원칙·방식·절차를 마련하고, 상시적인 관리를 통해 금융행정지도의 발령은 지양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왔다.

하지만, 금융회사 등에 실질적 부담을 주는 금융행정지도가 보이지 않는 그림자규제로 작용하여 금융산업의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이에, 금융행정지도 발령시 금융당국의 사전적인 심의절차를 강화하고 금융행정지도 연장횟수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금융행정지도의 운영상 미흡한 점을 개선함으로써 금융규제 제도의 운영상 투명성을 높이고 금융산업의 자율과 경쟁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 나. 개정안 주요 내용

###### ㉠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사전통제 강화

- (현행) 금융위 소관 행정지도의 경우 과 내부 결재를 통해 시행하는 등 사전통제 절차가 미흡
- (개정) 금융위 행정지도 사전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행정지도 심의·의결시 민간위원 등 외부 참여를 확대하여 투명성을 강화

② 금융행정지도의 연장횟수 제한(안 제13조제3항)

- (현행) 명시적 규제 전환 예정인 행정지도 이외에는 행정지도 연장 횟수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장기간 행정지도가 시행되는 문제가 있음
- (개정) 모든 행정지도에 대해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도록 연장횟수를 명확화

③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안 제14조제3항 신설)

- (현행) 현재는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명시적 규제로의 전환 등에 대한 검토 절차가 규정되어 있지 않음
- (개정) 매년 자체평가지 행정지도 등 비명시적 규제가 명시적 규제 로 전환이 필요한 지 여부를 함께 검토하도록 함

④ 금융행정지도의 실태평가 강화 (안 제20조제2항 신설)

- (현행) 금융규제의 운영실태평가지 비명시적 규제인 금융행정지도 에 대한 필요성 및 효과성에 대한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개정) 금융행정지도에 대한 실태평가지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다. 제도개선 효과

① 금융행정지도 심의절차 개선 및 투명성 강화

- 금융위원회에는 사전 심의 절차를 마련하고 금융감독원은 사전심의 절차에 민간위원 등을 위촉하여 투명성을 강화함에 따라 보이지 않는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는 금융행정지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② 금융행정지도의 사후관리 강화 및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 폐지

- 매년 자체 평가시 법규화가 필요한 금융행정지도를 검토하고 이를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 법규화를 추진
- 불필요한 금융행정지도에 대해 연장횟수를 1회로 제한하고 실태평가시 주요한 금융행정지도를 선정하여 해당 금융행정지도의 필요성과 효과성을 검토하여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함께 보고하도록 함

## 제3절 한국의 금융규제 샌드박스 추진현황

### 1. 그간의 추진 경과

현재의 규제체계로는 신기술·신산업의 빠른 변화를 신속히 반영할 수 없다는 인식 하에 ‘18.3월 규제 샌드박스 도입 등을 위한 규제혁신 5법이 국회에 발의하였다. 현재 4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정보통신융합법·산업융합촉진법은 1.17일, 금융혁신법(4.1일)과 지역특구법(4.17일)은 4월 시행 예정이다. 이로써 한국은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 또는 검토 중인 세계 20여개국가와 비교해 가장 앞선 제도를 가지게 되었다.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후속조치도 차질없이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융합법과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은 내주 초 공포 예정이며, 지역특구법과 금융혁신법 하위법령은 입법예고 중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 및 부처별로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알리고 안내하기 위한 설명회와

간담회를 20차례 이상 진행하고 있다.

\* ( '18.11.1) 중기중앙회, (7일) 대한상의, (9일) 스타트업포럼, (16일) 벤처기업협회 등

또한, 지난해 말부터 국무조정실과 과기정통부, 산업부는 규제 샌드박스 전용 홈페이지를 구축·운영하고 있으며, 경제단체와 기업 등과의 현장 소통을 통해 사전 수요도 파악하고 있다.

\* (국무조정실) better.go.kr, (과기정통부) www.sandbox.or.kr, (산업부) sandbox.kiat.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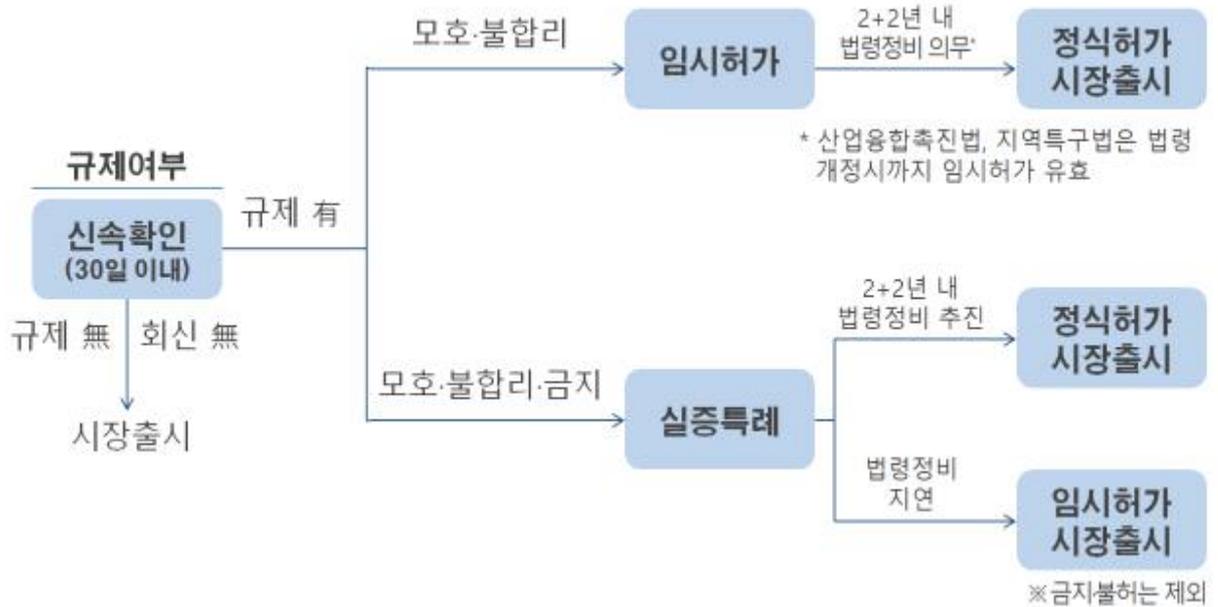
## 2. 주요 내용 및 기대 효과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신산업의 육성과 국민의 생명·안전 등 공익적 가치를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궁극적으로 정교하고 안전한 규제설계를 추구하는 제도이다. 우선, 기존 규제에 발목이 잡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가 싹도 트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 ① 기업들이 신기술·신산업 관련 규제 존재 여부와 내용을 문의하고 30일 이내 회신 받는 규제 신속확인 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30일 이내 회신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련 규제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도록 한다.
- ② 안전성과 혁신성이 뒷받침된 신제품·신서비스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모호하거나 불합리하여 시장출시가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허가를 통해 시장출시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한다.

③ 또한, 관련 법령이 모호하고 불합리하거나, 금지규정 등으로 신제품·신서비스의 사업화가 제한될 경우 일정한 조건하에서 기존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실증 테스트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한 규제혁신을 위한 세 가지 제도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아울러, 소비자 등 일반 국민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안전 관련 제도들도 함께 시행된다. 우선, 심의위원회 심사 시 국민의 생명·안전 등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규제특례 부여가 제한된다.

실증 테스트 진행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문제가 예상되거나, 실제 발생할 경우 즉시 규제특례를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사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손해 발생 시 고의·과실이 없음을 사업자가 입증하도록 하는 등 사후책임을 강화하였다.

이와 같은 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경우 기업과 소비자, 규제당국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은 유연한 규제 적용으로 기술 혁신과 혁신 창업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어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소비자는 새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선택권이 확대되고, 정부는 실증 테스트를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규제를 정비할 수 있다.

### 3. 향후 계획

우선,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심사하는 각 부처별 규제특례심의위원회는 분기별 1회 이상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시행 첫 6개월 동안에는 성과 창출·제도 안착을 위해 수시 개최할 예정이다. 특히, 법 시행 즉시 규제특례심의위원회가 바로 구성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1.17일 법 시행 직후 심의위원회 구성 및 향후 운영계획, 사전 수요조사 결과\* 등을 발표하고, 2월 중에 1차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사전조사 결과 약 20건의 신청희망기업 수요를 이미 확인하였다.

금융위원회는 법 시행(4.1일) 즉시 심의위원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1월말부터 사전신청 접수·협의, 2~3월 중 예비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기벤처부도 지역별 순회 설명회 및 사전 컨설팅 등을 통해 4월 중 규제자유특구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를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 샌드박스 시행 4개 부처는 사업자의 신청-심의-실증으로 이어지는 전 주기별 맞춤형 지원정책도 병행할 것이다. 부처별로 사전 상담·컨설팅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기업과 현장의 수요에 적기 대응해 나가고, 규제특례 심의의 내실화를 위해 신청기업이 직접 참석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심의위원과 토론하는 소위원회를 활성화 하게 된다.

또한, 소비자 안전과 실증 테스트 비용 일부를 지원하며, 판로 개척 등 연계지원 방안도 마련될 예정이다.

- \* 규제 샌드박스 시행을 위한 부처별 '19년 예산 확보 현황
  - ▶ (과기정통부) 28.1억원, (산업부) 28.9억원, (금융위) 40억원 수준  
(중기벤처부) 21.5억원 확보 + 목적예비비 추가 활용 예정

### III. 결론 및 시사점

영국 핀테크 산업이 급속히 성장한 주요 요인은 우수한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형성한 데 있으며, 이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 지원정책이 유효했던 것으로 평가된다. 주요 글로벌 핀테크 허브의 핀테크 에코시스템 구성 요소(인력, 자본, 정책, 수요)를 각각 비교해 보면 영국의 규제 혁신 및 지원정책 수준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인력 및 자본 분야에서는 캘리포니아가 1위, 수요 면에서는 뉴욕이 1위를 차지했으나, 영국정부의 우호적인 규제환경 조성은 영국 핀테크 에코시스템 전반의 효율적 운영을 가능하게 하였다. 혁신적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기존의 금융서비스 산업과 IT 산업 간의 유기적 협력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전반적인 에코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이 가능해야 한다. 영국의 사례를 통해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위해서는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뿐 아니라 기업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제·사회적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영국 디지털 경제는 최근 수년간 급속한 성장세에 있으며, 현재 유럽 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신생 고성장 핀테크 기업의 약 40%가 영국에 소재해 있다. 브렉시트 결정 이후 글로벌 금융 허브로서 런던의 지위 상실에 대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6년 10월 파이낸셜 타임즈가 발표한 글로벌 금융센터 순위에서 영국은 2015년에 이어 여전히 1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런던의 글로벌 금융 및 핀테크 허브로의 성장 요인 중 하나로 영국의 우수한 법률체계와 함께 풍부한 도시 문화를 제공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인재 유치가 용이하다는 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혁신과 경쟁을 강조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규제 당국과

기업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긴밀한 공조가 필수적이다. 과거 금융당국은 감독 대상 기업의 불법 행위를 감시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 반면, 영국 금융규제 당국인 FCA는 혁신적 핀테크 기업의 성장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적극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혁신기업에 대한 직접적 지원을 강화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 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금융서비스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혁신적 상품의 안전한 운영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FCA 산하의 이노베이션 허브(Innovation Hub) 프로그램은 핀테크 기업이 복잡한 금융상품 관련 규제를 쉽게 이해함으로써 상품에 대한 승인과정을 효과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직접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규제 위험 및 비용을 현격히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규제당국과 기업 간 협력체계를 통해 핀테크 기업의 시장 진출을 촉진할 뿐 아니라 규제 당국은 기업으로부터 즉각적인 피드백을 얻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모니터링 및 제도적 개선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핀테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해외 금융당국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해외시장 진출에 수반되는 규제 위험 및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다.

영국 규제당국이 호주 및 싱가포르와 체결한 위탁 메커니즘은 영국 기업이 상대국 시장에 진출하기 원할 경우 규제요건을 만족하기 위한 준비를 용이하게 하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동시에 해외 혁신 기업의 유치를 적극 추진함으로써 시장의 경쟁력과 상품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혁신적 핀테크 상품이 기존의 규제체계에 적용되기 어렵거나 위험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경우 혁신요소 및 소비자 보호 수준을 고려하여 규제 안전장치하에서 상품을 사전에 테스트해 볼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규제 위험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혁신적 핀테크 상품에 적용할 수 있는 규제체계가 존재하지

않는 영역에 있어서는 해당 상품이 시장 경쟁 및 소비자의 이익에 미치는 영향이 긍정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제도적 유연성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금융서비스 시장 감독 원칙에 있어서 안전성과 함께 경쟁을 강화할 수 있는 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 필요한데, 혁신적 서비스 또는 상품을 통해 소비자 보호 및 이익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규제접근 방식의 개선이 필요하다. 신규 핀테크 상품이 승인을 얻기까지 소요되는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도록 제한된 규제환경에서 사전 테스트를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경우, 신규 상품의 시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혁신적 요소에 수반되는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핀테크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조성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초기 자본 및 업무 공간을 지원할 뿐 아니라, 스타트업 기업들의 실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멘토링 및 기업 또는 투자자와의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핀테크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혁신적 아이디어뿐 아니라 비즈니스 모델, 자금 조달, 인력 유치 등 실제 사업 운영 및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갖춰져야 한다.

창업 및 기업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품화 성공률을 높일 수 있다. 성장 단계에 있는 제한된 수의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브랜드 이미지 구축, 네트워크 형성, 개인 및 기관 투자자와 연계 등의 과정을 지원하는 특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단계별로 필요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핀테크 스타트업, 금융기관, 규제당국 등 핀테크 에코시스템을 구성하는 주체들간의 정기적인 의사소통을 통해 에코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제 해결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또한 혁신적 핀테크 산업 성장에 필수적인 우수한 기술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 및 거주요건 개선 등 제도적 지원을 기울여야 한다.

핀테크 산업의 선장을 위해서는 국내외의 우수한 기술인력 양성 및 유치가 필수적이며, 해외 우수인력 유치를 통해 국내 시장의 혁신 및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FCA는 명확한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를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금융허브 지위를 유지하기 위한 ‘Project Innovate’ 정책을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서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였고, 샌드박스에서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이 제한적 규제하에 소비자를 보호하면서 성장할 수 있는지를 소규모로 테스트하였다. 특별한 금융상품이나 서비스를 지칭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격기준을 제시하여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하였고 일시적인 정책에 그치지 않고 1차 모임에서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 금융당국의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핀테크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출현하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정책적 접근이 요구된다.

영국의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 환용회사의 규제 샌드박스 필요성 검토에서부터 운영 시 필요한 규제의 면제 또는 수정에 이르기까지 세부적인 측면을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규제 테스트베드는 관련 협회 등과 협의하여 수요를 조사한 후 시행하는 것으로만 알려져 있어 시행 후 회사들과의 다양한 협의와 지원이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테스트베드를 통하여 회사가 생존하여 고객에게 보다 나은 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미 ICT 기술과 인공지능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글로벌 경제변화의 화두로 빠르게 대두되었다. 이미 미국, 독일, 중국 등 많은 경쟁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기 위해 경제, 금융 등 사회 전반에 걸친 대응전략과 비전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우리 정부도 4차 산업혁명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특히, 금융은 ICT 등 다른 산업과의 융합이 활발하고 혁신의 속도가 매우 빠른 만큼 글로벌 경쟁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

4차 산업혁명은 ICT, 인공지능, 로봇기술 등의 급격한 발전으로 사회 전반에 ‘파괴적(disruptive) 변화’를 초래하는 기술혁명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산업·기술 간의 포괄적 융합, 네트워크의 무한한 확장, 인공지능 발전에 따른 지능적 자동화 등을 통해 인간의 생활환경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전통적인 금융업의 모습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전통적인 금융중개기관의 역할이 약화되는 ‘탈중개화 현상’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클라우드펀딩이나 P2P 대출처럼 자금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직접 연결이 활성화되고, 핀테크 지급결제 등 IT 기업의 진출로 전통적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는 거래가 늘어날 것이다.

둘째, 금융인프라 체계가 기존의 집중형 방식에서 ‘분산형 인프라 체계’로 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분산원장 방식에 기반한 블록체인 기술의 등장으로 금융거래 및 계약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공인된 인프라 기관(Trusted 3rd party)의 역할이 축소되고, 다수의 참가자에게 권한이 분산될 것이다.

셋째, ‘빅데이터 혁명’이 일어나 소비자 맞춤형(on-demanding) 금융서비스가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회사가 개별 고객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수요자 맞춤형 금융상품을 개발할 수 있게 되고, 금융 소외계층의 금융접근성도 향상될 것이다.

넷째, ‘금융 플랫폼’이 금융회사 경쟁력의 원천이 될 것이다. 금융거래의 공간이 금융회사 창구·점포에서 벗어나면서 혁신적인 ICT 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보다 많은 수요자 접점을 확보할 수 있는 금융플

랫폼의 선점이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4차 산업혁명의 큰 변화 흐름에 선제적이고 주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금융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금융권에 4차 산업혁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금융규제, 인프라 등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등장 속도가 금융규제의 변화 속도를 추월하게 되므로, 기존의 규정 중심 금융규제만을 고수해서는 금융혁신에 제 때 대응하기 어렵다.

영국 등의 규제 샌드박스 사례를 참고하여 국내에서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금융서비스의 도입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제도 도입 및 특별법 제정도 검토해야 한다. 또한, 새로운 지급결제 수단을 반영한 금융인프라 정비 등도 심도 있게 논의해야 한다.

둘째, 금융과 다른 산업·기술 등간의 융합을 통해 금융부문 내 4차 산업혁명을 활성화해야 한다. 그동안 금융과 IT 간 융합을 통한 핀테크 혁신을 통해 인터넷 전문은행, 크라우드펀딩 도입 등 많은 성과가 있었다. 이러한 핀테크 확산을 보다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핀테크 발전 정책방향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금융권 빅데이터, 블록체인 활성화와 4차 산업혁명 대비 금융플랫폼 조성 등도 추가적으로 모색해 나가야 한다.

셋째로, AI, 자율주행차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분야에 대한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 우선, ‘신성장위원회’ 등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등 차세대 미래산업 분야에 자금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인공지능이나 나노기술, 자율주행차, 3D프린트 등 혁신적 신기술분야에 대하여 청년들이 자금부담 없이 도전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창업금융을 강화하고, 미국의 실리콘밸리처럼 혁신적 기업과 투자자가 동반자 관계를 형성하는 벤처생태계도 만들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건강한

창업생태계 조성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하며, M&A, IPO 등 모험자본을 위한 회수기회를 확충하여 새로운 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더욱 활성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4차 산업혁명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 노력도 철저히 해야 한다.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금융이용체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정보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전산사고 등에 대비한 금융보안 강화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의 모습은 아직도 우리에게 낯설고 불확실하지만, 결코 먼 미래의 일이 아니며, 급작스럽게 도래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지금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면 머지 않아 4차 산업혁명의 급속한 파고 앞에 뒤쳐지는 것은 자명할 것이다. 앞으로 정부와 민간이 머리를 맞대어 기존의 관행과 체계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 금융산업의 미래를 위한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 참고 문헌

Regulatory Sandbox, FCA, 2016

英国の Fintech Regulatory sandbox guidelines, MIZUHO, 2016

오세경, 디지털 환경변화에 따른 지급결제시장의 발전방안, 한국금융연구원, 2019

김정규, 디지털혁신과 금융서비스의 미래, 한국은행, 2017

황현정, 4차 산업혁명의 주요 신기술 적용 현황 및 시사점, 산은조사월보, 2017

양효은, 영국의 핀테크 산업지원정책 및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4차산업혁명기 금융산업 규제개혁 과제와 전망 세미나 발표자료집, 규제개혁위원회, 2018